



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

# 월간 뉴스레터

2016년 6월호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 Contents

### 회계정보

-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현행 회계감독 제도
-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금융감독원 2016.6.10)

### 세무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신설 및 개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2016.07)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mailto: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http://www.crowehorwath.co.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소식 등**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현행 회계감독 제도**

구 분	제도	제도 개요
[기업측] 대상: 상장법인,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마련 →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내용을 검토 후 감사보고서에 의견 표명
	재무제표제출의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할 때 증선위에 동시 제출 의무화('14년 7월 시행, 비상장법인 1년 유예)
[감사인측]	감사인선임 및 유지제도	상장법인: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 동일 이사 3년간 연속 감사 후 3년 제한 비상장법인: 동일 이사 5년간 연속 감사 후 1년 제한
	비감사 용역 제한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감사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감사용역 제공금지 [금지대상 비감사용역]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자산 매도 관련 실사 가치평가 용역 등 [직무제한 업무확대] (2016.3)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보험계리업무, 민·형사 소송 자문업무
	감사인 지정제도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회사에 대하여는 증선위가 외부 감사인 지정* [감사인지정대상회사] 감사인 미선임, 감리결과 조치, 소유·경영 미분리, 상장예정법인 등 [감사인지정대상확대] (2014.11)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등
[관리감독]	감리제도	(감사보고서감리)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각각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에 부합한지 조사하고, 위반시 제재 (품질관리 감리) 회계법인이 적정한 감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품질관리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외감법개정안)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 등 명시 품질관리기준 위반시 공시
	제재관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따른 조치 (회사)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담당임원 해임권고, 경고 등 (감사인) 등록취소, 직무 전부·일부 정지, 회사 감사제한 등 (과징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에 한해 과징금 부과 (외감법개정안)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외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도입(회계분식액의 10%, 최대 20억원)
--	--	--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금융감독원 2016.6.10)**
**개요**
**■ 개요**

□ 금융위원회는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 방지 등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례가 연이어 발생

- 회계법인들이 수익성 위주의 영업으로 감사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기업과 회계법인의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

□ 이에, 정부는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건, 대우조선해양 빅배스(Big-bath) 문제 등에 대응하여 지난해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15.10.28)

- 이와 함께, 외감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보완

(\*)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대형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강화 등

□ 이중 외감법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 지난 3.2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 철회권고(\*)를 받았으나,

(\*)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과잉규제 소지

- 당초 내용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으로 재심사 청구(5.30)한 바, 금번 6.10일 규개위 재심사를 원안통과하여 제재근거를 마련하게 됨

□ 정부는 기존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 회계법인 등이 본연의 감사업무에 충실하도록 소신있는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감사환경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사전 억제하는 감사시스템의 효율적 개편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
- 금년 하반기 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책임성) 강화방안(假)」을 마련할 계획

부실감사 방지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추진현황

■ 부실감사 방지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추진현황

<p>현행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감사제 운영</li> <li>▶ 감리보고서 감리</li> <li>▶ 동일감사인 3년간 유지</li> <li>▶ 비감사 영역 제한</li> <li>▶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li> </ul>	<p>외감법 전부개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도입</li> <li>▶ 감사품질 관리강화</li> <li>▶ 회사의 감사인 직접선임 제한</li> <li>▶ F/S 대리작성 요청금지</li> <li>▶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li> </ul>	<p>수주산업 회계투명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추정 합리성 제고 및 임의적 회계처리 제한</li> <li>▶ 주요 사업장별 회계처리 정보공시 강화</li> <li>▶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도입</li> </ul>	+	<p>추 가 방 안 마 련</p>

세부내역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 세부 내역

1.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제위 재심사 통과(6.10)

□ 회계법인가간 저가수임 경쟁심화로 적정한 감사인력.시간을 투입하지 못함에 따라 부실감사 문제 발생

- 현재는 부실감사의 책임을 현장 감사담당자에게만 묻고 있어, 저가수임이나 감사인력과 시간의 과소투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

□ 지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3.25, 이하 규제위)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외감법)이 철회권고를 받았으나, 규제 적정성을 보완(\*)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동 수정안이 원안통과됨 (6.10)

(\*)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되며,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사유를 명확히 하고 책임범위를 구체화함

구분	당초	수정안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록취소 직무정지*
제재범위	모든 외감회사	<p><b>이해관계자가 많은 외감회사</b> (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p> <p><b>대표이사의 감사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b></p>	
제재대상	모든 부실감사		

\* 고의에 의한 부실감사 또는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중대한 부실감사가 반복되는 경우

□ 상기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입법절차(법제처,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9월경 국회제출 예정

**추진중인 부실감사  
방지대책**
**2. 추진중인 부실감사 방지대책**

금융위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및 분식회계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가. 외감법 전부개정 추진**
**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강화**

-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 의무 부과

(\*) 경영진의 운영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임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 동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사항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 공표

⇒ 법령상 요구되는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인력 및 시간 투입이 필요하므로 저가수임 및 부실감사 행위 등 억제 기대

**② 회계법인의 독립성 확보**

-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회사가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제재

-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법인과 같이 연속하는 3 회계연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회사의 부당한 회계법인 교체 방지

⇒ 회계법인의 감사에 대한 회사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회계법인이 감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③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강화**

- ‘유한회사’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도입

- 외감법(\*)상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분식금액의 10%, 최대 20억원) 신설

\* (종래)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

→ (개선) 외감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미제출’ 외감법인의 분식회계에도 과징금 부과 가능

<참고> 분식회계 과징금 부과 확대 (자본시장조사사업규정 개정 중, 8월중 시행예정)

○ (종래) 유사·동종행위에 대해 가장 큰 과징금 1건만 부과 (→최대 20억원)

→ (개선)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개별 부과하여 합산 (→Σ 20억원)

➡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회계규율을 적용하여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분식회계 제재수준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경각심 제고

### 나. 회계법인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① 수주산업의 반복되는 회계절벽 현상 방지

※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참고 ('15.10.28 금융위 보도자료)

- (회계) 진행기준 회계적용에 따른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임의적 회계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수주산업 회계지침' 마련('15.12월)

(\*) 공사에정원가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입법(주1)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원가회수법(주2) 적용 지도

주1) 원가투입률을 공사진행률로 인식하여 계약금액의 비중만큼 수익으로 인식

주2) 발생한 원가 이내에서 회수가 가능한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

- (공시) 합리적 투자판단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도록 사업진행 현황, 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공시량(\*) 확대 ('16.5월)

(\*) 수주계약 금액이 총매출액 대비 5% 이상인 주요 사업장별로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 대손충당금 등 회계처리 정보 공시

- (감사) 감사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적극적 감사(\*) 유도 및 감사위원회의 역량 및 책임강화(\*\*)(도입 완료)

(\*) 수주산업 중요사항 핵심감사제('16.8월) 및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 마련

(\*\*) 분식회계 발생시, 회사내부 감사조직(감사위원회)에 대한 제재 부과 신설

- (감독) 수주업계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정하여 집중 테마감리(\*) 실시 ('16.7월)

(\*) 수주업계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유가 등 원자재 가격에 따른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한계기업 등의 영업현금 흐름 공시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 ②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내부- 외부 감독 강화

- 분식회계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한을 5억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중)

- 회사가 회계부정 의혹 발생시 감독당국에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해줄 것을 적극 신청할 있도록 감리 인센티브 부여

- 금감원내 대기업 등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16.1월)

#### ③ 회계감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 종래 상장기업만 금감원에서 감리하였으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도 금감원에서 감리

- 위탁감리(한공회)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 등 발생시 금감원에서 직접 감리하여 취소. 수정 요구 (→위탁감리 수정요구권 도입)
- 한공회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여 인적구성의 공공성 확보 (외감법 시행령 개정 중)
- (\*) 현재는 한공회 회장이 위탁감리위 구성 및 선임 등에 대해 모든 권한 행사

➡ 수주업계의 반복되는 회계절벽 현상을 차단하고, 회계감독 강화 및 감리 효율성 제고를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에 기여

#### 다. 감사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 ① 회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사전차단
  -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피감회사 주식거래 전면금지 및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한공회 규정 개정, '16.1월부터 시행 중)

구분	현행	개선
(거래제한)	본인 참여 감사대상회사 주식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신고대상)	<b>Manager</b> 직급 이상	모든 임직원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현황' 공시 ('15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 ② 감사인의 직업윤리 강화
  -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과목(\*)에 직업윤리 포함, 상시적 직업윤리교육확대(2시간→8시간)
  - \* '17년 CPA 제2차 시험부터 회계감사 과목에 직업윤리를 포함하여 출제할 예정

➡ 공인회계사가 회사와의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직업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 세 무 정 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신설 및 개정

지난 2016년 5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신설 및 개정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이 영이 공포(대통령령 제 27127 호, 2016.5.10) 된 날부터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내용

- 1)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의 확대(제 23 조 제 1 항 제 44 호 및 제 45 호 신설)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대상 업종에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또는 승마장업 등과 그와 관련된 종합 체육시설업을 추가함
  
-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제 104 조의 21 제 3 항 신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포함함.
  
- 3) 감면세액 추징 면제 사유 확대(제 116 조의 10 제 2 항 제 7 호 신설)
  - 감면세액 추징 면제 사유에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7 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함.
  
- 4) 각종 사업재편계획과 관련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될 내용 및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신설 (제 116 조의 29 부터 제 116 조의 34,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황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범위 및 계산방법(제 116 조의 29 신설)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범위 및 계산방법 (제 116 조의 30 신설)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범위 및 계산방법 (제 116 조의 31 신설)
  -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범위 및 계산방법 (제 116 조의 32 신설)
  -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범위 및 계산방법 (제 116 조의 33 신설)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합병계획의 범위 및 계산방법 (제 116 조의 34 신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2016.07)**
**주요내용**
**■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16년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16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lt;의무발행 추가 업종의 가맹점 가입기한&gt;

구 분	가맹점 가입기한
'16. 2월 이전 개업	'16. 5. 31. * 시행령 공포일('16. 2. 17.)이 가입요건 해당일
'16.3월 이후 개업	개업일(가입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하지 않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에게 이를 부과할 수는 없음. **(대법 2015 두 52050, 2016. 1. 28.)**

■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 용역의 공급자

- 어떤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비로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것은 당초 사업자이며 용역대금 채권의 양도로 공급자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 2014 두 13812, 2016. 2. 18.)**

##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r/>(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mailto: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